

보도시점 : 2024. 7. 10.(수) 11:00 이후(7. 11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7. 10.(수)

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,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

- 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…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'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'을 마련하였다.
 - 이번 개선방안은 **공인중개사**, **중개보조원**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**현장** 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,
 -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 - 이번 개선방안은 **민간전문가·한국공인중개사협회·중개업 교육기관**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**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**(위원장: 제1차관)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.
- □ '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'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중개사무소 개설등록(개업)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.
 - **부동산 중개**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 중개사에게는 **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**되나,
 -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(28~32시간)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.
 -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**공인중개사**의 **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** 으로 확대하여,

- 거래당사자의 **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** 민법 및 임대차법, 권리 분석,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**과목의 시간을 늘린다.**
-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, 주택·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, 계약 실무, 거래 신고,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.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.
- 2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.
 -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~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 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 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.
 - 이에, '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' 교육을 강화하고,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의 업무 영역,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, 현장안내 요령 등 '중개보조 실무'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(3~4시간→8 시간)할 예정이다.
- 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'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,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(7.11~8.22)와 행정예고(7.11~8.1)를 할 계획이다.
 - 개정안 전문은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의 "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·행정예고"에서 볼 수 있고,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*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

| 담당 부서 | 토지정책관 | 책임자 | 과 장 | 박동주 (044-201-3434) |
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부동산개발산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현정 (044-201-3435) |
| | | | 주무관 | 김영운 (044-201-3453) |







참 고

공인중개사 교육제도 및 개선방안

○ 관련 근거

- 공인중개사법 제34조(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(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),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
- 공인중개사법 제45조(업무위탁), 동법 시행령 제36조(업무의 위탁)

○ 교육기관 지정

- 시·도지사가 2년마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·시설 등을 심사, 수탁기관 지정
- 수탁기관은 **협회, 부동산 관련 학과**가 **개설**된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
 - * 한국공인중개사협회, 8개 대학교(건국대, 동국대, 서울벤처대학원대, 한국열린사이버대, 신한대, 평택대, 수원대, 대구과학대) 교육기관 지정

○ 교육제도 개선방안

| 구 분 | | 실무교육 | 연수교육 | 직무교육 | |
|----------|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교육 대상 | | 개업공인중개사 | 중개보조원 | | |
| 교육 시기 | |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·고용신고 전 1년 이내 |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|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| |
| 교육 시간 | 현행 | 28~32시간 | 12~16시간 (2년 주기) | 3~4시간 | |
| | 개정안 | 64시간 | 16시간 (2년 주기) | 8시간 | |
| 개정 법령 | | 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, 「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」 | | | |